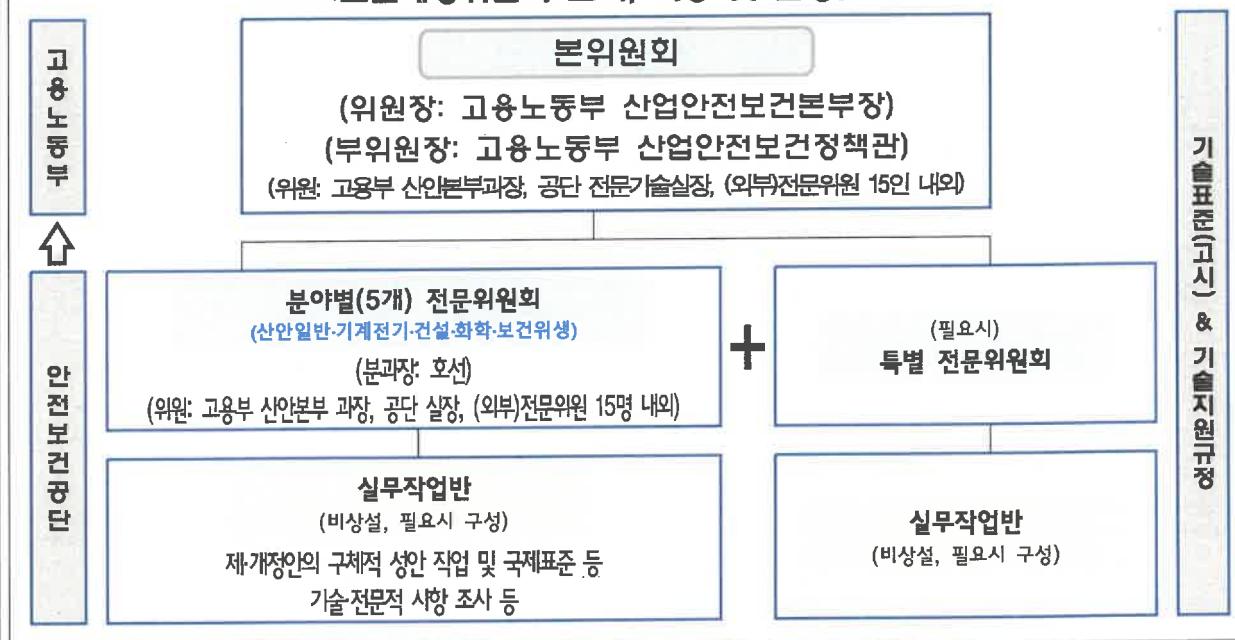


[붙임 2] 산업안전·보건표준제정위원회 제도 안내문

『산업안전·보건표준제정위원회』 제도 안내

산업안전·보건표준제정위원회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안에 대한 심의 및 관련 고시 제·개정에 대한 자문과 ②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정(일명 'KOSHA GUIDE')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1개 본위원회와 5개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·운영됩니다.

<표준제정위원회 조직, 기능 및 운영절차>



■ 본위원회

- 역할: 표준제정위원회 운영 총괄, 전문위원회 설치·폐지, 위원회 기능·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, 고시·가이드 제·개정 계획 수립 및 제·개정안 심의

■ 전문위원회

- 역할: 고시·가이드 제·개정안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자문

■ 실무작업반(전문위원회 내)

- 전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한시적 설치(비상설)
- 역할: 제·개정안의 구체적 성안 작업 및 국제표준 등 기술·전문적 사항 조사 등

■ 심의절차

- ① 고시·가이드 등 개정 계획 상정(전문위원회) → ② 개정 계획 심의(본위원회)
- ③ 개정 계획에 따른 제·개정안 성안(전문위원회) → (필요시) 실무작업반 구성
- ④ 성안된 제·개정안 상정(전문위원회) → ⑤ 제·개정안 심의(본위원회)
- ⑥ 제·개정안 발령(법령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발령)